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4일, 권영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9. 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권영세)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재유)

가. 시설물 관리주체 책임 강화(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u>필요한</u>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u>제5호의</u>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제5호 및 제6호의-----.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시설물 안전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교량, 터널 등과 같은 시설물의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책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 제6조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3조에서 추가하려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책무가 실제 정책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

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u>제1종시설물에</u>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 <u>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u>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u>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u>제12조제4항에</u>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u>제12조제5항에</u> ----- ----- -----

현행	개정안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제1종시설물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을 추가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적 ‘안전점검’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

구분	안전점검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제1·2·3종시설물	제1·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 다만,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 정밀안전점검 실시 가능

이와 같이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제1종시설물이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 및 다목적 댐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인적·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의 경우 그 규모 및 사용 대상을 고려해 볼 때, 노후화로 인한 붕괴 사고 등의 발생 시 그 인적·물적 피해가 제1종시설물과 같이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도 비록 소규모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하게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파손, 붕괴 등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제1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국가 등 관리주체의 책임 및 안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제1종시설물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 중 안전점검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 시설물 긴급안전조치 대상 확대(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합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및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대상에 해당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3조에서는 제22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등(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로부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관리주체가 직접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에게 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안 제12조에서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 등을 추가·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그 내용을 현행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대상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조문 내용의 법적 연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물적·재산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안 제24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합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신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신설>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합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설>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대상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4조는 시설물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3조, 제6조 및 제12조 등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국가 등 관리주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대상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사전 조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안 제12조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외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도 추가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마.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63조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 6. (생략) ② (생략)	제63조(벌칙) ① ----- ----- -----.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 5. (생략)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제65조(벌칙) ① ----- -----3년----- -----3천만원-----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8. <u>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u>	<삭 제>
9. <u>제30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u>	<삭 제>
10. <u>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u>	<삭 제>
11. <u>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 <신 설>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u> 2. <u>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u> 3. <u>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u> 4. <u>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u> 5. <u>제30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u> 6. <u>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u><신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2의2. (생략) 3. ~ 6. (생략)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u><신설></u> <u><신설></u>	<u>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u> 7.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 -----<u>3천만원</u>----- -----.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 -----<u>2천만원</u>-----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6. (생략)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6.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8. ~ 15. (생략)	8. ~ 15. (현행과 같음)
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제>
17. · 18. (생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미이행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 및 점검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정확성,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임.

<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상향 조정(안)
벌칙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 서류 열람 또는 교부 요청에 불응한 자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자료 미제출자	500만원 ⇨ 1,000만원
	· 시정요청에 불응한 자 ·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500만원 ⇨ 2,000만원
	·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자	1,000만원 ⇨ 3,000만원
	· 내진성능평가를 미실시한 자 ·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자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미통보 또는 미제출자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등	1,000만원 ⇨ 2,000만원
	· 정밀안전진단을 미실시한 자 · 긴급안전점검을 미실시한 자	2,000만원 ⇨ 3,000만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9. 기타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12조에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67조제2항제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7조제2항제2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 ----- ----- <u>3천만원</u> ----- -----.	제67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1. <u>제12조제1항</u> 및 <u>제2항</u>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u>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에----- ----- ----- --	1. (개정안과 같음)
2.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3. <u>제40조제1항</u> 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u>2천만원</u> ----- -----.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u>제12조제3항</u> 에 따라 내진성능평	2. (현행과 같음)	2. <u>제12조제4항</u> 에 따라 내진성능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개정안과 같음)
2의2. (생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2의3. (개정안과 같음)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u><삭 제></u>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③ (개정안과 같음)

	<u>열람 또는 그 사</u> <u>본의 교부 요청에</u> <u>정당한 사유 없이</u> <u>따르지 아니한 자</u> 2. <u>제18조제2항에</u> <u>따른 정밀안전점</u> <u>검 또는 정밀안전</u> <u>진단 실시결과에</u> <u>대한 평가에 필요</u> <u>한 관련 자료를</u> <u>정당한 사유 없이</u> <u>제출하지 아니한</u> <u>자</u> 3. <u>제59조제3항을</u> <u>위반하여 정당한</u> <u>사유 없이 시정</u> <u>요청에 따르지 아</u> <u>니한 자</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u>제10조제3항을</u>	④ ----- ----- ----- ----- -----. 1. 2. (현행과 같 음) <삭제>	④ (개정안과 같음) 1. 2. (현행과 같 음) (개정안과 같음)

<u>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u>		
4. <u>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개정안과 같음)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5. · 6. (개정안과 같음)
7. <u>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개정안과 같음)
8. ~ 15. (생략)	8. ~ 15. (현행과 같음)	8. ~ 15. (개정안과 같음)
16. <u>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u>	<u><삭 제></u>	(개정안과 같음)

<u>하지 아니한 자</u> 17. · 18. (생략)	17. · 18. (현행과 같음)	17. · 18. (개정안과 같음)
<u>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④ (생략)	<u><삭 제></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필요한”을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6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제1종시설물에”를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 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제23조제1항 중 “통보받는”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60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4항에”를 “제12조제5항에”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3호·제4호·제7호·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u><신 설></u>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u>필요한</u>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 ----- -----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u>제5호의</u>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제5호 및 제6호의</u> ----- -----.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 ⑨ (생 략)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u>제1종시설물에</u> 대 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 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u>통보받는</u> 등 시설물의 구조상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u>수시점검에 관한 사항</u>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u>제1종시설물과</u> 대 <u>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u> <u>물에</u>-----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 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 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 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 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 ----- <u>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u>
--	--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

		<u>대한결합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①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	
1. <u>제12조제4항에</u>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1. <u>제12조제5항에</u>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 -----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u>제12조제1항</u> 및 <u>제2항에</u>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1. ----- --- <u>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	

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 ----- <u>3년</u> ----- ----- <u>3천만원</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u>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u>	<u><삭 제></u>
<u>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u>	<u><삭 제></u>
<u>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u>	<u><삭 제></u>
<u>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u><삭 제></u>

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
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
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
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
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u> 따	4. <u>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u> 5. <u>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u> 6. <u>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u> 7. <u>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u> 8. <u>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 ----- --<u>3천만원</u>----- -----. 1. <u>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
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생 략)

3. ~ 6. (생 략)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에-----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
-----2천만원-----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4항에 -----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
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
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
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 6. (생략)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u>16.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u> <u>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u> <u>니한 자</u>	<u><삭 제></u>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u>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u> <u>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u> <u>따르지 아니한 자</u>	<u><삭 제></u>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